

#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325
----------	-----

제안연월일 : 2024. 8. .

제안자 : 평창군수

## 1. 제안이유

-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본계획 농림축산식품부 승인에 따라 본격적인 사업 실시에 앞서,
- 남부생활권 아동·청소년 대상 특화교육 및 아동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제공하고자,
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7조 규정에 의거 '평창 특화 프로그램 운영' 민간위탁에 대한 평창군의회 동의 받기 함.

## 2. 주요내용

### 가. 위탁사무명

-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

### 나.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

- 추진근거
  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시행)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  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(대상사무)
  -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

○ 추진필요성

- 양질의 교육서비스 제공을 위해 경험과 전문 지식이 탁월한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체계적인 사업을 운영하고자 함.

다. 위탁사무 내용 등 위탁 범위

- 위탁내용: 평창 특화 꿈자람 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전반
  - 범위: 아동청소년 대상 특화교육 및 아동청소년 지도자 양성과정 운영

라. 민간위탁기간

- 위탁기간: 2024. 11. ~ 2026. 12.

마. 수탁자 선정방식(제8조 준용, 공개모집 의무)

- 수탁자격: 특화 교육프로그램 수행이 가능하고 지자체 협력 교육사업 경력이 있는, 국내 4년제 대학 및 교육업무 법인·단체
- 선정방법: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(평창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기초계획단 위원으로 구성)

바.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

- 위탁금 예산 지원 : 850백만원(국비 595, 군비 255)
  - ※ 평창읍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비(군특회계)

사.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(제4조의2)

- 민간위탁 대상사무 여부
  - 지역 내 교육 서비스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공익성과 전문성, 사업의 능률성이 함께 요청되는 사무로 판단
  - 「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」 제4조에 따른 사무 위탁 가능

- 위탁 필요성
  - 특히 청소년 교육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민간의 축적된 전문지식과 인력 및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교육, 서비스 제공 등 운영의 효율성 기대 가능
-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 - 전문기관의 인적·물적 네트워크를 활용한 원활한 서비스 연계처리 등이 가능한 측면에서 위탁방식이 적합

#### 아. 그 밖에 민간위탁 심의에 필요한 사항

- 향후 추진일정
  - 민간위탁 공개모집 공고: 2024. 10.
  -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및 선정: 2024. 10.
  - 위·수탁 협약 체결: 2024. 11.
  - 프로그램 시범운영: 2024. 12. ~ 2025. 1.
  - 프로그램 본격운영: 2025. 3. ~
- 관련법령
  -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시행)
 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  -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(대상사무)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8조(농어촌 지역종합개발계획의 수립·시행)

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의 지역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인근 마을을 하나의 권역(圈域)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할 수 있다.

1. 주거환경의 개선
2. 생활기반시설의 확충
3. 정보이용시설 및 문화복지시설의 설치
4. 농어촌의 경관 보전
5. 농어촌관광의 진흥, 농어촌산업의 육성 등 주민소득의 증대
6. 그 밖에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을 세워 시행하려면 해당 지역의 주민을 최대한 참여시켜야 하며, 이들의 의견을 우선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에 따른 지역종합개발계획은 가급적 「지방소도읍육성 지원법」 제4조에 따른 종합육성계획과 연계하여 세워져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른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한국농어촌공사 등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.

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지역종합개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0.7.23][[시행일 2011.1.24]]

## □ 지방자치법

###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,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(사업소·출장소를 포함한다)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.
-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-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## □ 평창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

### 제4조(대상사무)

- ① 위탁사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대상으로 한다.
  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사무
  2. 공익성을 위하여 능률성도 함께 요청되는 사무
  3. 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무
  4.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
- ② 제1항의 대상사무는 군의 조사·검사·검정 등 업무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관리업무로 구분한다.

1. 노인, 장애인, 여성, 아동, 청소년, 노숙인 등 복지시설
2. 환경기초시설
3. 문화·관광·체육시설
4. 공원·녹지시설
5. 보건·건강증진시설
6. 산업지원, 직업훈련, 교통 등 관련 시설
7. 공무원 후생복지시설
8. 그 밖에 1년 이상 위탁기간인 단순 행정관리 시설물